



제418회국회(정기회)
제9차보건복지위원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자활급여에 대한 1년 주기 실태조사 실시 등〉

■ 소병훈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04393호)

2024. 11.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연광석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자활급여의 실태조사 및 급여기준의 적정성 평가 실시 의무화	3

I. 개요

1. 소병훈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4393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소병훈의원 등 14인
- (2) 제 안 일 : 2024. 9. 27.
- (3) 회 부 일 : 2024. 10. 2.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자활급여의 하나로 실시되고 있는 자활근로의 급여단가 책정 시 최저임금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반영되지 않아 자활근로에 참여하는 수급자와 차상위자들이 충분한 급여를 받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음.

2024년도 자활급여 예산의 일 급여 단가를 살펴보면 단가가 가장 높은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의 경우에도 단가가 57,930원으로 올해 최저임금 기준 일급 78,880원(시급 9,860원, 8시간 노동 기준) 대비 약 70% 수준임. 또한, 최근 3년간 자활근로 급여 단가 인상률은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0.1~1.9%p 낮았던 것으로 나타남. 이는 저소득층의 근로 유인 및 자립기반 구축이라는 자활근로사업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수준임.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자활근로에 대하여 1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공표하도록 하고 급여기준의 적정성 평가 시 최저임금,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여, 자활근로사업 성과와의 연계 및 중앙생

활보장위원회 심의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0조의2).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자활급여의 실태조사 및 급여기준의 적정성 평가 실시 의무화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자활급여에 대하여 1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공표하도록 하고(안 제20조의2제4항 단서 신설), 그 결과 및 물가상승률, 최저임금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급여기준의 적정성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제2항).

현행	개정안
제20조의2(기초생활보장 계획의 수립 및 평가) ① (생략)	제20조의2(기초생활보장 계획의 수립 및 평가) ① (현행과 같음)
② 보건복지부장관 및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 <u>결과를</u> 고려하여 급여기준의 적정성 등에 대한 평가를 <u>실시할 수 있으며</u> , 이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조사·연구 등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민간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 ----- ----- <u>결과 및 물가상승률, 최저임금 상승률 등을</u> ----- ----- ----- <u>실시하여야 하며</u> ----- ----- ----- ----- -----.

③ (생 략)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수급권자,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의 규모·생활실태 파악, 최저생계비 계층 등을 위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공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⑤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 ---. 다만, 제15조에 따른 자활급여에 대하여는 1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공표하여야 한다. ⑤ (현행과 같음)
--	--

나. 검토의견

□ 현행법에 따르면, 소득기준 또는 부양의무자 기준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수급권자에게 생계급여·주거급여·의료급여·교육급여·해산급여·장제급여·자활급여 등 7가지 급여를 지급하고 있음.¹⁾

□ 자활급여는 근로빈곤층의 탈수급 및 자립·자활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에서 지급되는 급여로,

근로 역량 및 근무 강도에 따라 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형, 근로유지형으로 나뉜 사업단에서 근무하고 급여를 수령할 수 있음.

< 자활근로 유형 >

자활근로 종류	'24년 단가(일)	사업 유형
시장진입형	61,930원	집수리, 청소, 세탁, 제과제빵 사업 등
인턴·도우미형	61,930원/ 54,200원	사회복지시설·자활업무 행정도우미 등
사회서비스형	54,200원	가사·간병지원 서비스 등
근로유지형	31,800원	꽃길조성, 시설물관리, 환경정비 등

□ 2024년 자활근로 단가는 근로유지형 61,930원, 사회서비스형 54,200원, 시장진입형 31,800원으로 전년대비 2.5% 상승하였고, 같은 기간 최저임금 인상률 및 소비자물가 상승률(예측치)도 2.5%로 나타났다.

- 2022년의 경우 자활근로 단가의 1월 인상률은 3%였으나, 8월 단가 추가 인상(2.6%)으로 전년대비 인상률은 약 5.9%로 최저임금 인상률(5.1%) 및 소비자물가상승률(5.1%)을 모두 상회하였음.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급여의 종류) ①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계급여 2. 주거급여 3. 의료급여 4. 교육급여 5. 해산급여(解産給與) 6. 장제급여(葬祭給與) 7. 자활급여

- 2023년의 경우 자활근로 단가의 전년대비 인상률은 3%로, 최저임금인상률(5.0%)과 소비자물가상승률(3.6%)을 모두 하회하였음.

< 2022~2025년 자활근로 단가 현황 >

(단위: 원)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안)
	1월	8월*	1월	3월**		
근로유지형	30,120	30,900	31,020	31,670	31,800	32,980
사회서비스형	51,350	52,770	52,890	54,000	54,200	56,210
시장진입형	58,660	60,300	60,420	61,690	61,930	64,220

* 고물가로 인한 저소득층 부담 경감을 위해 추가 인상

** '물가·민생경제 상황 및 분야별 대응방향'(23. 2. 비상경제민생회의) 조치사항 등 반영

*** 자료: 보건복지부

< 2022~2025년 전년대비 자활근로 단가 인상률 >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안)
	1월	8월	1월**	3월		
근로유지형	3%	2.6%	3%	2.1%	2.5%	3.7%
사회서비스형	3%	2.8%	3%	2.1%	2.5%	3.7%
시장진입형	3%	2.8%	3%	2.1%	2.5%	3.7%
최저임금 인상률	5.1%		5.0%		2.5%	1.7%
소비자물가상승률	5.1% (통계청)		3.6% (통계청)		2.5% (oecd 예측치)	

* 표의 인상률은 직전 단가 인상 대비 상승률임.

단, 2023년 1월과 2024년의 경우, 각각 2022년 1월 및 2023년 1월 대비 인상률을 나타냄.

** 자료: 보건복지부

□ 자활급여를 통해 근로빈곤층의 자립·자활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근로빈곤층의 생활실태, 근로능력 및 욕구 등에 대한 상세한 자료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필요성은 있다고 할 것임.

- 현재는 현행법 제20조의2제4항에 따라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수급권자·수급자 및 차상위계층²⁾ 등에 대하여 생활실태, 규모,

육구, 전물량 방식³⁾을 통한 최저생계비 계측 등의 대규모 조사를 통해 기초생활보장제도 전반에 대한 조사 및 평가를 하고 있음.

□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 첫째, 자활급여에 대한 실태조사 주기를 1년으로 설정하는 것에 대하여, 실태조사 및 자활급여의 성격, 3년마다 수립하는 기본계획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주기를 1년보다 더 길게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우선, 법 제20조의2제4항에서 실시하고 있는 실태조사의 성격은 수급권자 등의 규모와 생활실태, 최저생계비 등을 파악하는 것으로서 단기간에 급격하게 변화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가 아니고, 자활근로 사업단을 통해 근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상황 파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는 행정적 부담과 그 정확성 담보 등에 대하여 검토할 여지는 있다고 보임.

- 또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3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태조사도 이러한 기본계획 수립에 토대가 되는 자료 확보에 도움이 될 정도의 주기로 실시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을 것임.

□ 둘째, 자활급여기준의 적정성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물가상승률에 대한 고려로 단일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제14조의2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3) 전물량 방식은 생활에 필요한 모든 소비물자(서비스 포함)를 물량으로 표시하여, 필요 물자의 구입가격을 합계하여 산출하는 방식을 말함.

- 최저임금 상승률은 매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경제사정 등을 감안하여 치열한 토론을 거쳐 인위적으로 설정되므로, 시장에 따라 경제 상황을 반영하는 물가상승률과 함께 고려될 경우 자활급여의 적정성에 대한 판단에 지장을 줄 소지도 있다고 보임.

3. 관계 부처 및 단체 의견

- (보건복지부) 최저임금·물가상승률 등 고려하여 자활근로 급여 단가의 적정 수준을 정해야 한다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나, 법 제20조의2는 모든 급여에 대한 내용을 포괄하는 조항으로 자활급여에 한정된 내용을 정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음.

또한, 현행법에서도 급여의 종류별 최저보장수준을 정함에 있어 제2조제6호 및 제6조에 따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법제20조의2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에서 최저생계비 계측을 위해 필연적으로 물가를 고려하고 있는 바, 법에서 급여적정성 평가 기준으로 물가상승률을 추가로 규정할 실익은 낮은 것으로 사료됨

법률상 실태조사는 전체 수급자 등의 생활실태 파악·최저생계비 계측 등에 관한 내용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종인 자활급여 대상자도 최저생계비 등 실태조사 내용은 동일하게 적용됨.

□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기초생활보장·자활급여 3개년 기본계획에 의거 자활사업에 대한 평가와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므로 1년마다 실태조사·공표는 불필요하고, 최저임금 상승률과 급여기준의 적정성 등에 대한 평가에 개연성이 불확실하며, 법 제2조제6호의 최저보장수준에 대한 내용 및 제4조의 급여의 기준 등 관련 조항과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함.

문 의 처
02)6788-5497

참고	자활사업 개요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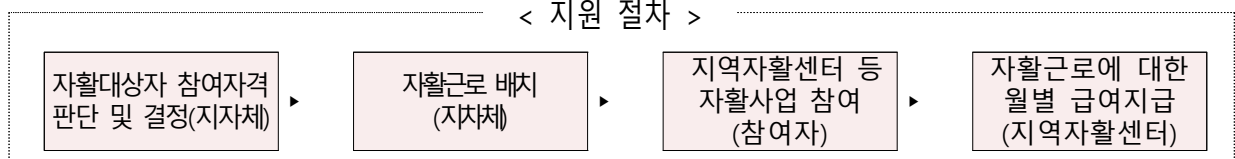
□ 자활사업 개요

- **(사업목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자 등 근로빈곤층의 탈수급 및 자립·자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빈곤 예방 및 탈빈곤 촉진**
- **(지원대상)** 생계급여 조건부 수급자(의무참여), 조건부 수급자 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자(희망 참여)

- 연도별 목표정원 및 실적 (단위: 명)

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
계 획 인 원	58,000	58,000	66,000	66,000	66,000
참여자 수	48,903	55,436	60,476	58,902	58,633

- **(전달체계)** 시·군·구(수급자 선정·관리), **지역자활센터**(일자리 운영)



- **(지원내용)** 자활근로 사업단에서 일자리 참여하며 급여 수령, 자활근로와 사례관리 등을 병행하여 장기적인 자립·탈수급 준비
- **(근무여건)**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원칙. 월 소득 최대 1,610천원*('24년)
* 표준소득액(월) 기준
- 근로 역량 및 근무 강도 등에 따라 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형, 근로유지형으로 나뉜 사업단에서 근무

<자활근로 유형>

자활근로 종류	'24년 단가(일)	사업 유형
시장진입형	61,930원	집수리, 청소, 세탁, 제과제빵 사업 등
인턴·도우미형	61,930원/ 54,200원	사회복지시설·자활업무 행정도우미 등
사회서비스형	54,200원	가사·간병지원 서비스 등
근로유지형	31,800원	꽃길조성, 시설물관리, 환경정비 등